

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)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의 안	1632
번 호	

제출일자 : 2018. 12. 5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출근거 및 사유

- 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
 같은법 시행령 제22조
- 사유 :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및 문화시설) 결정안 입안을
 위하여 공공청사(다사읍 행정복지센터 서재출장소)에
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및 문화시설) 결정안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내 용	비 고
신설	도시관리계획 (공공청사 및 문화시설) 결정안	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33번지 일원	○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· A = 3,875m ² 중) 3,875m ²	중복결정 (공공청사, 문화시설)

3. 결정사유

-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라 성장하는 다사읍 서재지역의 늘어
 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재출장소 부지에
 공공청사,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
 질 향상 도모

4.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

○ 주민열람개요

- 열람기간 : 2018. 10. 16. ~ 11. 2.(토·일·공휴일 제외 14일간)

※ 일간지 공고 : 경상매일신문, 경북일보

- 열람자 : 없음

- 제출의견 : 없음

○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

구분	계	반영	일부반영	미반영
관련부서 의견	없음	-	-	-

5. 추진상황

○ 과업착수 : 2018. 9. 13.

○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(기관) 협의 : 2018. 10. 16. ~ 11. 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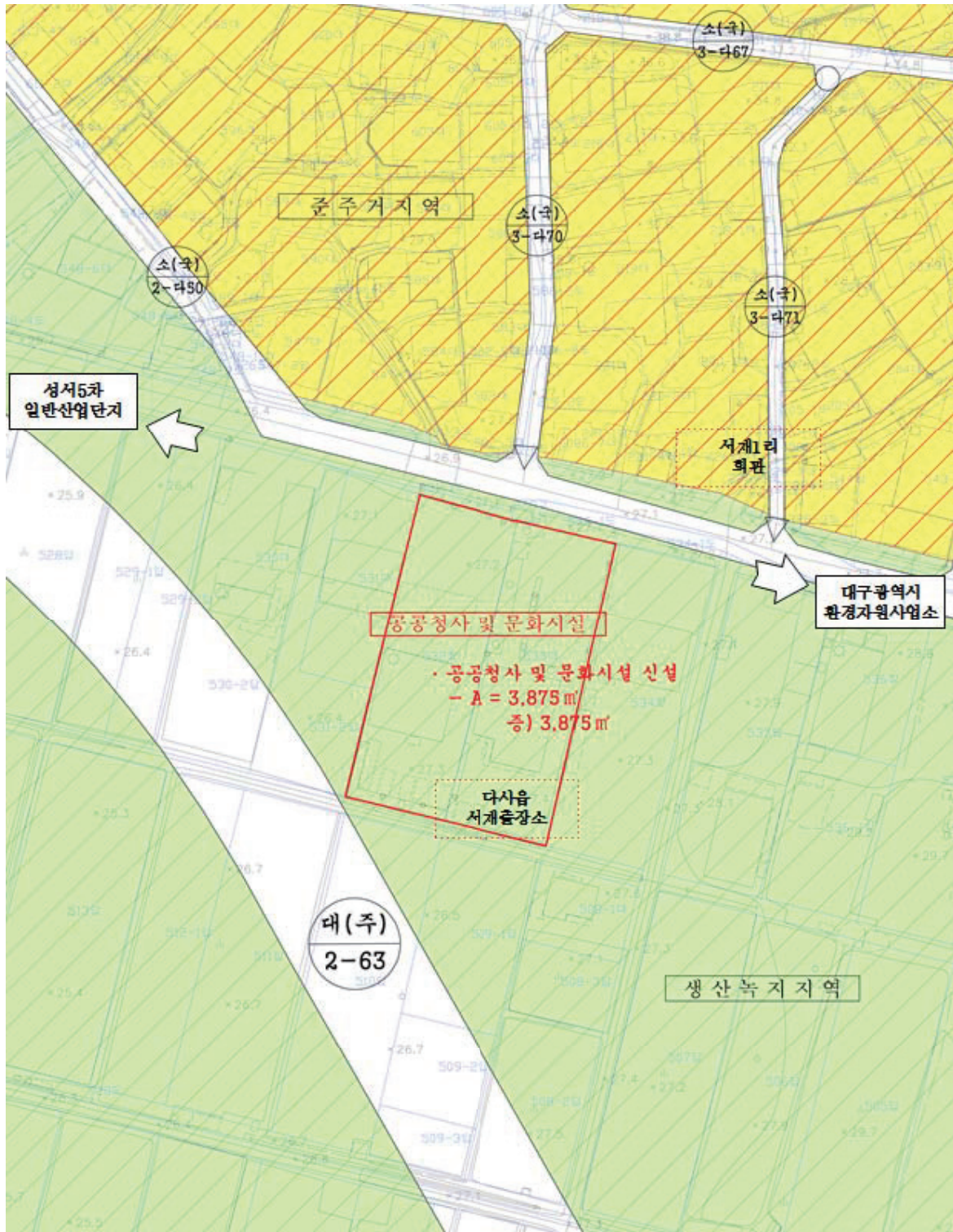
6. 향후일정

○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: 2018. 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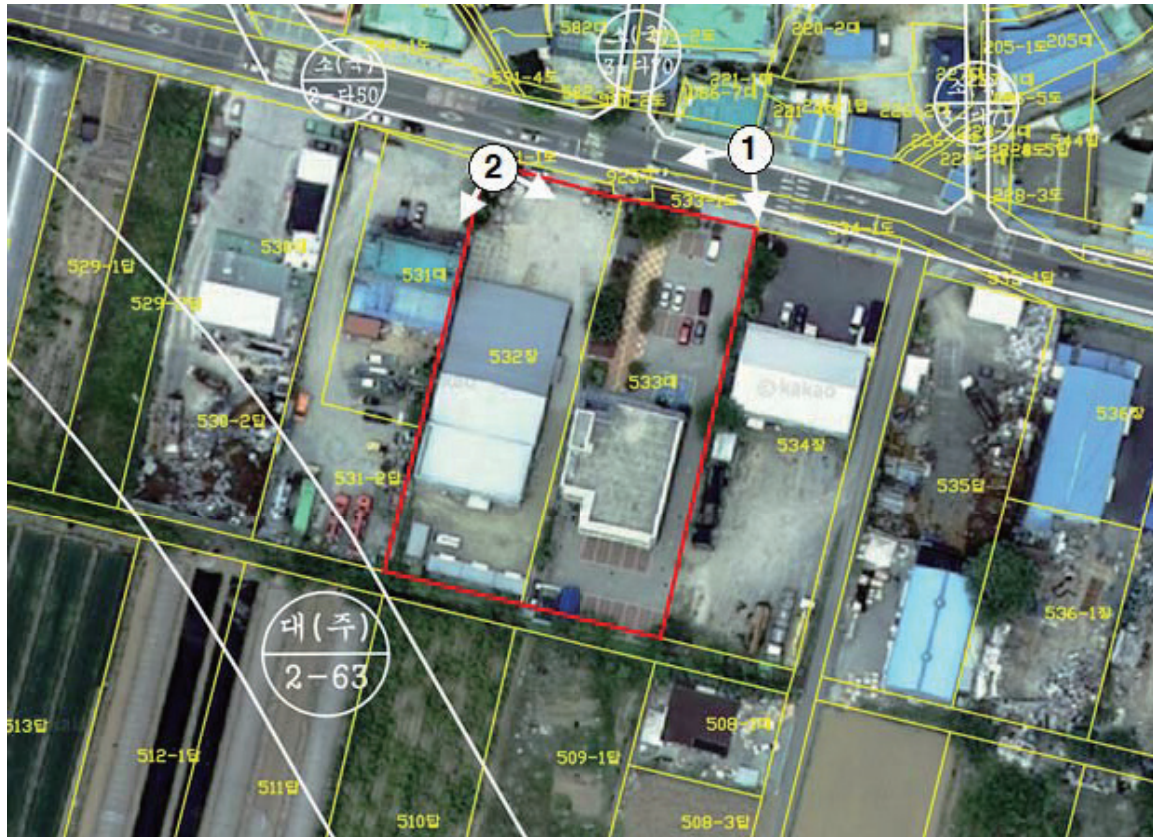
□ 위 치 도

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도



□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



서재리 533번지 (대지 / 1,941㎡)

서재리 532번지 (공장용지 / 1,934㎡)



